

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)에 따라 「'23년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수집·분석 및 과제 용역」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.

2023. 4. 28.

서울특별시시장

1. 용역명 : '23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수집·분석 및 과제 용역

2. 용역내용

- '23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방안 마련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수집 방안 마련 및 자료 수집
- 공시 대상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기초자료 구축·분석
-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

3. 사 유

본 용역은 '23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방안 마련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, 민간위탁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수집 방안 마련 및 자료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」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)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

본 용역의 과업특성상(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)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

※ 비영리법인 범위 : 비영리 사단법인,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 등

4. 문의사항

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(☎02-2133-5038, 이정미 또는 ☎02-2133-5045, 박경국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